

1. 建設技術開發補償制度節次規程制定

建設部訓令 第826號 1992. 2. 14

취 지

1. 법적 근거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5항('87. 4. 1 개정)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 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기술개발보상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건설부 훈령 제826호, '92. 2. 14)

2. 주요 내용

○ 대상 공사

－ 건설부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사용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계약대상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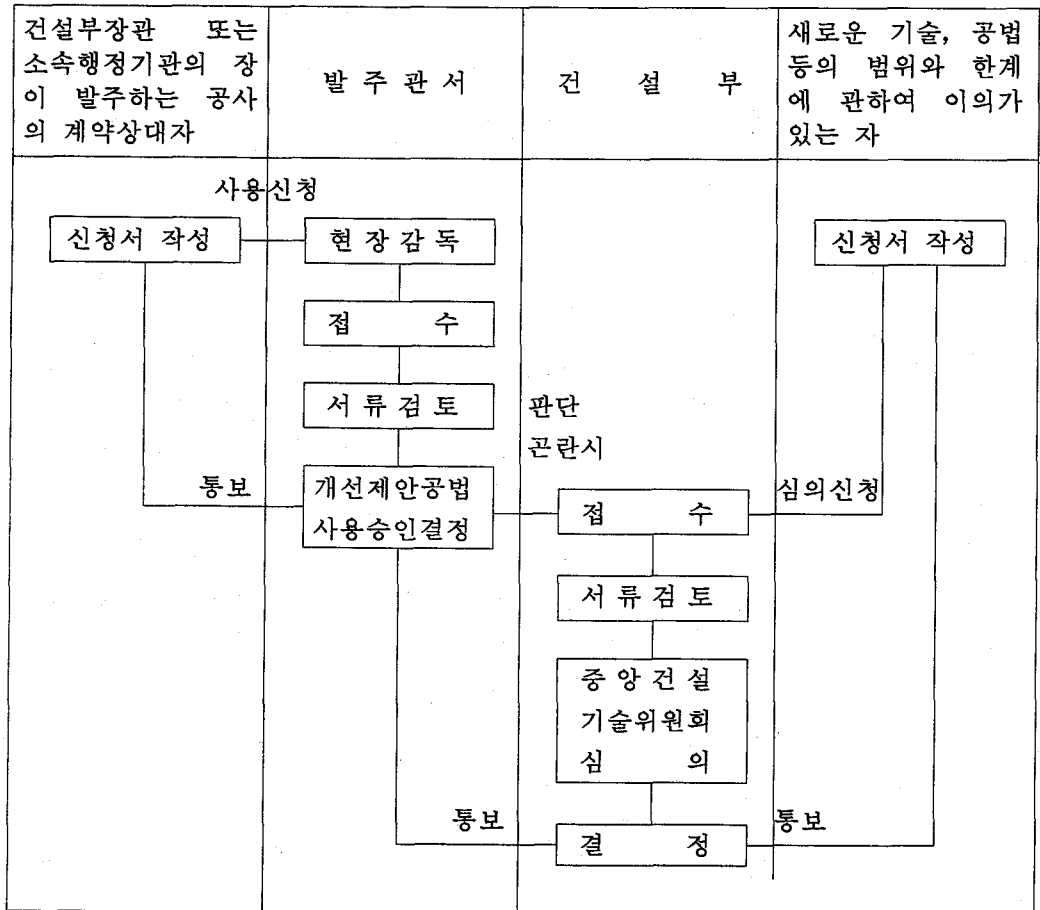
○ 기술개발범위

-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할 경우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개선제안공법을 말함.

○ 보상범위

- 발주기관 장은 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으로 지급함.

○ 운영 절차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부장관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제 3 조(사용신청) 발주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

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함으로써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도서
5.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제 4 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

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이의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장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중앙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제4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및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서 10부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7 조(중앙위원회의 심의) ①중앙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제안공법의 사용가능 범위와 한계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심의결과 통보) 건설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그 계약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심의결과 조치) 발주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감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후관리)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 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각 중앙관서의 장,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전화번호	
	③주소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법인)등록번호	
공사개요	⑥공사명		⑦공사기간	
	⑧계약금액		⑨발주처	
	⑩공사위치			
신청내용	⑪신청건수		⑫절감액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선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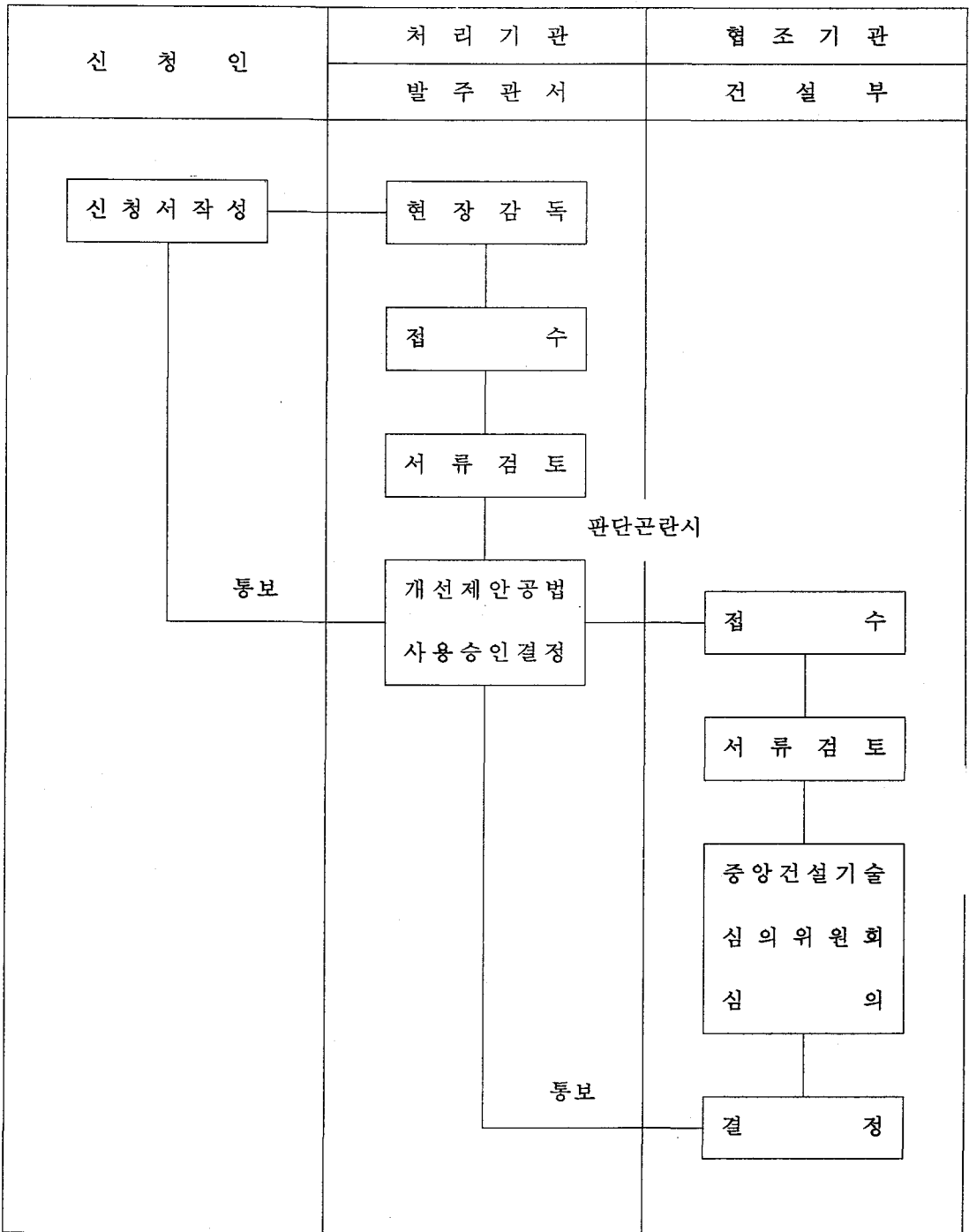
신청인 (인)

(발주관서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공사비절감제안서

제안서번호

공 사 명		현장대리인	
개 선 자 명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공 사 비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 감 액 (A - B)	
	D	절 감 율 (C / A × 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별지 제3호 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전화번호	
	③주소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법인)등록번호	
공사개요	⑥공사명		⑦공사기간	
	⑧계약금액		⑨발주처	
	⑩공사위치			
신청내용	⑪신청건수		⑫절감액	
승인내용	⑬승인건수		⑭절감액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을 별지와 같이 승인(기각)함.

년 월 일

(발주관서장)

(인)

첨부서 : 개선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별지 제3호의 1서식) 1부

개선제안공법승인(기각)내역서

분	야	제안서 분	야	개	신	안	명	절	감	액	승인여부	승인하지 아니한 사유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술심의요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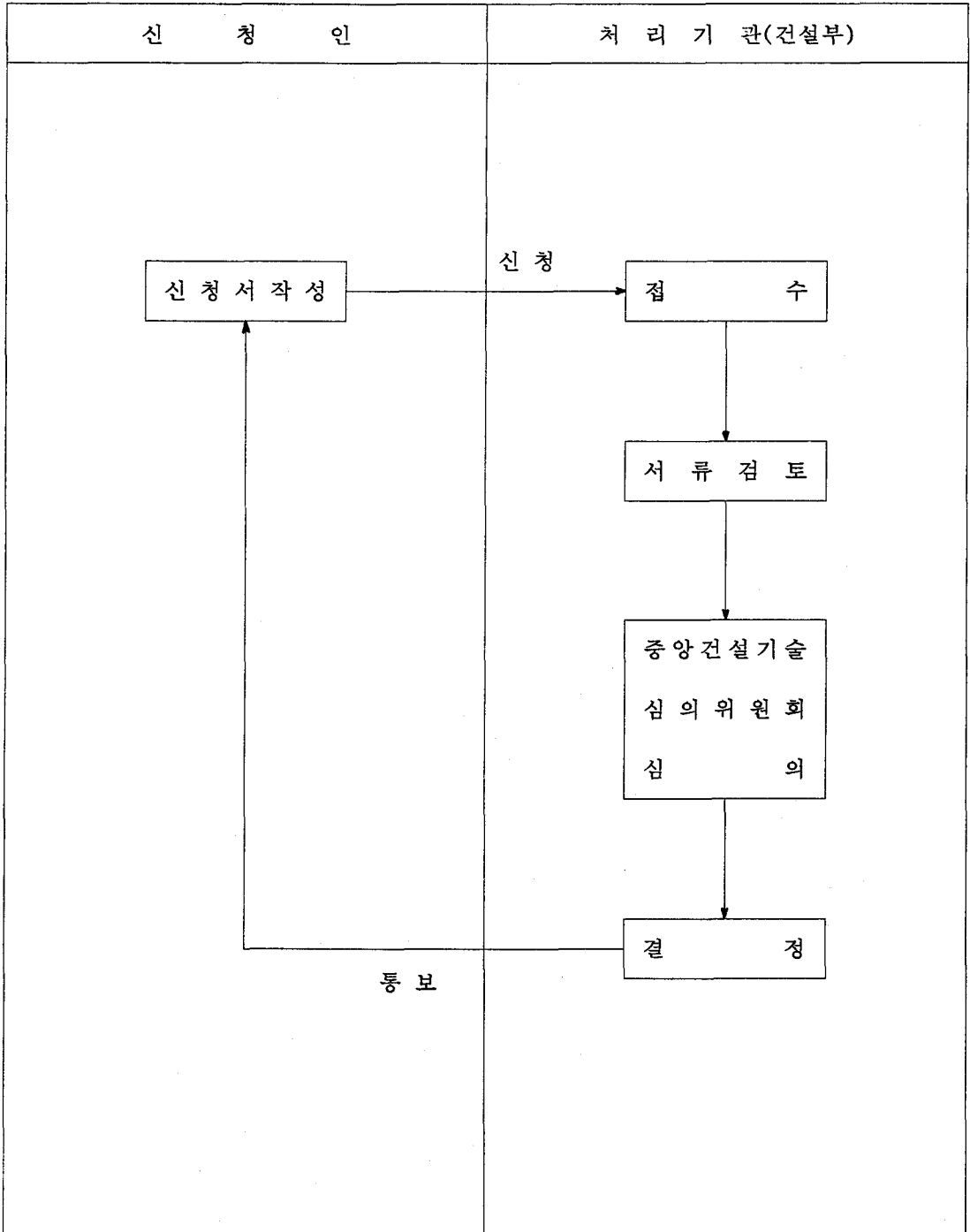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호
구 분	새로운 건설기술심의

건 명	
-----	--

심의요청인	
제출년월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5호 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처리결과

발 주 처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제 출 일 :

①분 야	신 청 내 용	절 감 금 액	인 정 여 부	비 고

①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설비분야, 전기설비분야로 구분하여 기재